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4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5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정근수당) 관련 별표3 <정근수당 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정근수당 지급구분표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2. 정근수당 가산금(추가가산금)

근무년수	월 지급액	비고 (추가가산금)
20년 이상	100,000원	1.근무년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사람에게 월 10,000원 가산 2.근무년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월 30,000원 가산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제50조(비상임임원의 보수)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